

## 「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24일

나. 발 의 자: 신용하 · 김근한 · 김낙관 · 김재우 · 김민성 · 김영길 · 김영태 · 김원섭 · 박교상 · 박세채 · 소진혁 · 양진오 · 이명희 · 이상호 · 이지연 · 장미경 · 정지원 · 추은희 의원(18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신 용 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,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입영지원금 지급(안 제3조)
-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(안 제4조)
-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병역법」 제2조, 제5조
  -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 격려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우리시 입영대상자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, 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, 사업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세부 계획을 작성할

때에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, 지원금 지급통지 절차와 문자, 전화, 우편, 팩스 등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, 지급 대상자가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, 신청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및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해당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 또한, 군복무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장기적 검토도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입영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 필요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